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110
----------	------

제출년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 권장 및 지원 (아동수당 등)
- 지역내 백화점, 대형유통점, 기업형슈퍼, 유흥음식점 배제로 중소상인 보호
- 할인 판매로 상품권 구입 유도 및 서민 생계에 도움
-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지역상품권 수요(지급처) 증가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 지자체 증가 및 지역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안산사랑상품권 등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안 제3조).
-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안 제4조).
-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안 제6조).
-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7조).
-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안 제8조).
-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9조).
- 상품권 환전,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상품권 활성화 시책(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불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2

□ 관련사업계획서 : 불임3

□ 예산수반사항 : 불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12. 7. ~ 12. 27.(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불임5

< 불임 1 >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 발행하는 “안산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및 중앙회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다음 각 호의 권면 금액에 따라 2종으로 한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②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산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5. 발행번호
6. 유효기간
7. 현금 환불기준
8.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상품권 사용 문의 관련 전화번호 등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제조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②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령으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이를 시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 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추석 명절: 10% 범위에서 할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

②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30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지도·감독을 위하여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장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지역경제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정 규 상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경제담당 임 종 현
	담당자 성명·전화	안동선 (행정 2829)

[별지 제1호서식]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금주 :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산 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소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지정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

[별지 제3호서식]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가맹점지정 번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소			
사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	------------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10
----------	------

제안년월일 : 2018. 2. 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환전대행단체를 삭제하고 판매대행단체의 역할을 판매대행점으로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판매대행단체 및 환전대행단체를 삭제 함.(안 제11조제2항)
- 판대대행단체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함.(안 제11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2항중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3호(생략)</p> <p>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p> <p>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p> <p>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3호(원안과 같음)</p> <p><u><삭제></u></p> <p>4.(원안 제5호와 같음)</p> <p>5.(원안 제6호와 같음)</p>
<p>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 -----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생략)</p> <p>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p> <p>③ 시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을 규칙으</p>	<p>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원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p> <p><u><삭제></u></p>

원안	수정안
<u>로 정한다.</u>	
<p>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p> <p>① (생략)</p> <p>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지도·감독을 위하여 <u>판매</u> <u>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u>에 장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 ----- <u>판매</u> <u>대행점에</u>----- -----.</p>

5. 주문사항

- 조례시행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예산반영 절차를 준수하기 주문함.